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53

제안년월일 : 2023년 04월 25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하고, 혼용하고 있는 ‘공시’와 ‘공표’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‘공시’와 ‘공표’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‘공시’로 통일함(안 제22조).

○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함(안 제31조제1항제3의2 신설).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안 제22조의 제목 “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표)”를 “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등을 통해”를 “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”로 한다.

안 제29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31조제1항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,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22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표)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,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	제22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 ② (개정안과 같음)
제2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2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를 설치한다.	제2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② ~ ⑤ (개정안과 같음)
제3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3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---------- 시장은 ----------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3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~ 3. (생 략)	1.~ 3. (현행과 같음)	1.~ 3. (개정안과 같음)
	<신 설>	3의2.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<삭 제>	
③ (생 략)	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
2.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”를 “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사항을 심의한다”를 “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3의2.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

제32조제4항 중 “비치하여야 한다”를 “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다만,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지방보조사업자 공모) ① (생 략)	제9조(지방보조사업자 공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.	② 제1항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1.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.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18조(성과평가) ① (생 략)	제18조(성과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② ~ ④ (생 략)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제22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,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	제22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----------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3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---------- 시장은 ----------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~ 3. (생 략)	1.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의2.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<삭 제>
③ (생 략)	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3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생 략)	제3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	④ ----------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요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다만,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